

[별표 6]<개정 1995.4.1, 1997.4.14>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4조제3항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1.저온보관고	농수산물 및 공산품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2.운반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포장기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 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4.판매용 진열대	농수산물 및 공산품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5.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6. 자동분류기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7. 컨베이어시스템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8. 자동창고시스템	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
9. 파렛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10. 파렛타이저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로봇식 파렛타이저
11. 랙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랙시설
12. 파렛트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비고>

- 1.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 2.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